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24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 6. 9.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1. 6.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핵심 용어와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리 구 조례에 「지능정보화¹⁾ 기본법」을 반영하면서,

- 현행 7장 59조의 조례를 7장 40조로 간결하게 정비

나.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3조)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

다.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안 제4조~제12조)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²⁾”의 수립과 위원회의 설치·구성

1) 제2조(정의)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및 기능과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

라.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안 제13조~제25조)

-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식정보자원의 관리·공유·유통, 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제4장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안 제23조~제24조)

- 정보격차의 해소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바. 제5장 정보화자료 관리 (안 제25조~제27조)

- 정보화자료의 관리와 자료제공, 수수료에 관한 규정

사. 제6장 정보화 교육 (안 제28조~제33조)

-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과 기반 구축, 공무원·구민 등의 정보화 교육, 교육시설·장비의 확보와 수수료 징수 규정
- 안 제33조제1항의 “별표 1”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기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 운영 시 10% 감면조항 삭제³⁾

아. 제7장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안 제34조~제40조)

- 홈페이지 설치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 이용자 참여 행사, 전자학습 등과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학습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강료의 10% 감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영 제46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성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5조의 성북구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마.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의견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2020. 6. 9. 전부 개정되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2021. 6.10.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핵심 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59개 조문 중 사문화 되어 실효성이 없는 19개의 조문을 삭제하여 40개 조항으로 간결하게 정비하여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배려를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등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